

의안번호	제605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1월 24일 (제326회)

##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4년 1월 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**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**

의 안 번 호	605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월 8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**1. 제안사유**

- 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연령 등을
- 대통령령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(2013.12.12.제정)」으로 상향하여 반영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**2. 주요내용**

- 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폐지

## **3. 의안전문 : 붙임**

## **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 ※ 현행조례 붙임**

## **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**

## **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**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**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현 행 조례

### □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

(2012.7.16. 시행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 12.31>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(이하 “별정직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 <개정 1995. 9. 22, 2010. 12. 31>

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“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. <개정 2009. 8. 7. 2010. 12. 31>

**제3조(임용권자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, 전보, 휴직, 복직,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 <개정 2010. 12. 31>

②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0. 3. 13, 2010. 12. 31>

**제4조(임용자격)** ① 삭제 <2010. 12. 31>

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 12. 31>

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0. 12. 31>

**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**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8. 7>

**제5조(임용절차등)**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. 다만,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·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,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,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,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.

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

2.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

3.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초빙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

4.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.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5.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

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,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(檢定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,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12. 7. 16]

**제5조의2(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)**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 [본조신설 2012. 7. 16]

**제6조(신규임용 최저연령)**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.

**제7조(전보)**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0. 3. 13>

**제8조(근무상한연령)**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단서 신설 2000. 3. 13, 개정 2010. 12. 31>

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.

③ <삭제 1998. 11. 27>

④ <삭제 1998. 11. 27>

**제8조의2(교육훈련)** ① 임용권자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. [본조의조 신설 <2010. 12. 31>]

**제9조** 삭제 <2010. 12. 31>

**제10조(직권면직)**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 <개정 1998. 11. 27, 2009. 8. 7, 2010. 12. 31>

1. 삭제 <2012. 7. 16>

2.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 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

3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4.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**제11조(병역·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)**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같은 조 제2항제4호·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,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,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.

[전문개정 2012. 7. 16]

[제목개정 2012. 7. 16]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[전조개정 2009. 8. 7}

## **제11조의2 <삭제 2009. 8. 7>**

**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**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8. 7>

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 <개정 1998. 11. 27, 2009. 8. 7, 2010. 12. 31>

**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**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2. 31>

[전조개정 2009. 8. 7]

**제12조의2(시간제근무)**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.

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[본조의조 신설 <2010. 12. 31>]

**제13조(징계)**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09. 8. 7, 2010. 12. 31>

**제14조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**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개정 1999. 7. 30>

[별표] <신설 2010. 12. 31>

**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(제4조제3항 관련)**

상당계급	임용자격
3급상당 이상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</li></ol>
4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</li></ol>
5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</li><li>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</li></ol>
6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한 사람</li><li>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</li></ol>

상당계급	임용자격
7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</li> <li>2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4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5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6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ol>
8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</li> <li>2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4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5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ol>
9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</li> <li>2.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ol>

※ 비고

-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(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)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(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임용예정직위가 비서, 비서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.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# □ 지방공무원법 (2013.12.12. 시행)

**제2조(공무원의 구분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>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3. 삭제 <2012.12.11>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>

1. 정무직공무원
    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
    - 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 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 3. 삭제 <2012.12.11>
  4. 삭제 <2011.5.23>
-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(2013.12.12. 시행)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 
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  
직공무원(이하 "지방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용,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  
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  
에 따른다.